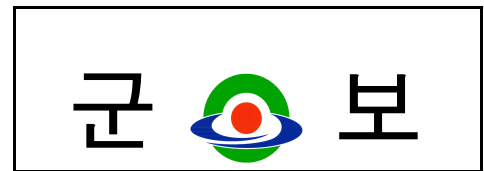
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213호 2020. 1. 2.(목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공 고

- 재단법인 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(예천군 공고 제2020-2호)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(전화 650-6066)

재단법인 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재단법인 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0년 1월 2일

예 천 군



1. 조 례 명 : 재단법인 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2. 개정이유

- 재단법인 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정관 변경 및 엑스포 추진 뿐만 아닌 문화, 관광 진흥을 위한 역할 확대에 따라 재단 명칭 변경 및 세부사항을 수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확립코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명 변경

- 현행 : 재단법인 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
- 변경 : 예천군 재단법인 예천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나. 재단법인 설립 목적 개정 (안 제1조)

- 예천군의 문화관광정책 개발 추진 및 예천세계곤충엑스포 등 지역축제 육성

다. 법인 명칭 변경 (안 제2조제1항)

- 현행 : 재단법인 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
- 변경 : 재단법인 예천문화관광재단

라. 재단법인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개정 (안 제3조)

- 지역문화관광 관련 사업, 문화관광 관련 국·도비 공모 추진, 예천세계곤충엑스포 등 축제 추진에 관한 사항 등

마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재단법인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제출기한 수정 (안 제7조)

- 현행 : 3월말 → 변경 : 2월말

바. 공공시설 및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의 구체화 (안 제12조)

- 현행 : 공공시설의 위탁 → 변경 : 공공시설의 관리 및 사무의 위탁

4. 개정조례안

붙임과 같음

5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(참조: 문화관광과장)에게 서면, 팩스, 전자우편,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항목별 의견 : 찬·반 여부와 그 사유

나. 성명(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/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
※ 제출처

- 주소 : (우)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문화관광과
- 전화 : 054-650-6033, 팩스 : 054-650-6399, 전자우편 : kbk2864@korea.kr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조례명 : 재단법인 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
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조례안 내용	의견	비고

예천군 조례 제 호

재단법인 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재단법인 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재단법인 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”를 “예천군 재단법인 예천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예천군의 문화관광정책의 개발 추진과 예천세계곤충엑스포 등 지역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예천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,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예천군이 출연하여 설립하는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예천문화관광재단(이하 “재단법인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사업) 재단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지역문화관광 관련 정책 개발 및 지원
2. 지역문화관광 사업의 추진 및 자문
3. 문화관광 관련 국·도비 공모사업 추진
4. 국내·외 문화관광 교류 및 활동지원

5. 문화관광 및 지역 축제 관련 인력 양성 및 교육
6. 문화관광 관련 6차 산업 육성 및 지원
7. 예천세계곤충엑스포의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 등 관련 업무
8. 그 밖에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엑스포 준비 및 관련 사업의 운영”을 “문화관광진흥 사업 추진 및 예천세계곤충엑스포 등 지역축제 육성”으로, “제4조”를 “제4조제1호”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공유재산 등의 대부)”를 “(공유재산 등의 사용 등)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3월말”을 “2월말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엑스포의 원활한”을 “재단법인의 원활한 사업”으로 한다.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(업무의 위탁) 군수는 재단법인의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 및 군수의 권한에 속한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재단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단법인 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

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재단법인 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또는 정관의 변경을 통하여 그로부터 명칭이 변경된 재단법인은 이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예천문화관광재단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재단법인</u> <u>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</u> <u>지원 조례</u>	<u>예천군 재단법인 예천문화관광재단</u> <u>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</u>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“예천곤충엑스포”(이하 “엑스포”라 한다)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재단법인 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,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예천군의 문화관광정책의 개발 추진과 예천세계곤충엑스포 등 지역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예천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,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법인의 명칭 및 기구) ① 예천군이 출연하여 설립하는 법인의 명칭은 “재단법인 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”(이하 “재단법인”이라 한다)라 한다.	제2조(법인의 명칭 및 기구) ① 예천군이 출연하여 설립하는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예천문화관광재단(이하 “재단법인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② · ③ (생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제3조(사업) 재단법인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.	제3조(사업) 재단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엑스포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	1. 지역문화관광 관련 정책 개발 및 지원
2. 엑스포 행사장 전시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관리	2. 지역문화관광 사업의 추진 및 자문

3. 엑스포 조직 운영, 재원조달과
집행

4. 엑스포 개최관련 문화·예술행
사 및 부대행사의 추진

5. 엑스포 홍보에 필요한 각종 사
업의 추진

6. 엑스포 부대사업의 시행

7. 엑스포관련 정부, 지방자치단
체,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협조

8. 그 밖의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
에 필요한 사업

제4조(재단법인의 재산) 재단법인의
재산은 다음 각호의 출연금으로
한다.

1. ~ 3. (생략)

제5조(운영비 등 지원) 예천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재단법인의
설립운영, 엑스포 준비 및 관련 사
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제4조
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
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공유재산 등의 대부)

제7조(결산) 재단법인은 매 회계연
도의 세입·세출결산서와 해당연
도의 사업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
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3. 문화관광 관련 국·도비 공모
사업 추진

4. 국내·외 문화관광 교류 및 활
동지원

5. 문화관광 및 지역 축제 관련 인
력 양성 및 교육

6. 문화관광 관련 6차 산업 육성
및 지원

7. 예천세계곤충엑스포의 종합계
획 수립과 집행 등 관련 업무

8. 그 밖에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
에 필요한 사업

제4조(재단법인의 재산) -----
----- 각 호-----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운영비 등 지원) -----

----- 문화관광진흥 사업 추진
및 예천세계곤충엑스포 등 지역축
제 육성-- 제4조제1호-----
-----.

제6조(공유재산 등의 사용 등)

제7조(결산) -----

----- 2월말-----
-----.

제9조(공무원 파견) ① 군수는 엑스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「지방공무원법」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을 재단법인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12조(공공시설의 사용) 군수는 엑스포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공공시설을 재단법인에 위탁하여 사용·관리하게 할 수 있다.

제9조(공무원 파견) ① ----- 재단법인의 원활한 사업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업무의 위탁) 군수는 재단법인의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 및 군수의 권한에 속한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재단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